

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2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. 9. 3.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‘용자’를 ‘용자 등’으로 확대하여, 서울시장
이 임차인 보호를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
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‘용자’를 ‘용자 등의’로 수정함.(안 제16조
의2제1항제3호)

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“용자”를 “용자 등의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임차인 보호) ① 시</u> <u>장은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</u> <u>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</u> <u>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</u> <u>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</u> <u>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</u> <u>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</u> <u>있다.</u> 1. <u>법률·금융·주거지원</u> <u>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</u> 2. <u>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</u> <u>주비 지원</u> 3. <u>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</u> <u>한 용자 지원</u> 4. <u>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</u> <u>위하여 시장이 필요하</u> <u>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</u> <u>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</u> <u>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</u> <u>다.</u>	제16조의2(임차인 보호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----- <u>용</u> <u>자 등의---</u> 4.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임차인 보호) ① 시장은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률·금융·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
2.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 지원
3.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
4.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임차인 보호) ① 시장은</u> <u>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</u> <u>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</u> <u>료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</u> <u>지 못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</u> <u>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</u> <u>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법률·금융·주거지원 상담</u> <u>및 유관기관 연계</u> <u>2.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</u> <u>지원</u> <u>3.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용</u> <u>자 등의 지원</u> <u>4.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</u> <u>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사업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절</u> <u>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</u> <u>이 별도로 정한다.</u>